

FOR INFORMATION ONLY

RULES OF ASSEMBLY OPERATIONS (RAO)
AMENDMENTS ADOPTED BY THE 50th GENERAL ASSEMBLY
2023

ITEM 1: Amend *RAO 4-21.d* by addition of a paragraph [4-21.d.4)] – underlined).

RAO 4-21.

- d. The contents of the minutes should include the following items:
- 1) The names of persons leading in opening and closing prayers at all sessions;
 - 2) In the event of a called meeting, the portion of the call stating the purpose of the meeting should be recorded verbatim in the minutes;
 - 3) A recording of the actions of the Committee or Board, including all motions adopted and business transacted, together with such additional information as the Committee or Board deems desirable for historical purposes. Ordinarily in church courts, motions that are lost are not included in the record unless an affirmative vote for the lost motion is recorded, in which case the lost motion must be shown. Each main motion should normally be recorded in a separate paragraph. Subsidiary and procedural motions may be recorded in the same paragraph with the main motion to which they pertain. Main motions may be recorded in the same paragraph, if they are closely related and pertain to the same item of business.
 - 4) A recording of information sufficient to demonstrate the Committee's or Board's implementation of instructions received from General Assembly and of material policies and material policy changes adopted by the Committee or Board in that year.

ITEM 2: Amend *RAO 16-3.e.6* as follows (new wording underlined):

RAO 16-3.e.

- 6) Minutes of presbytery relating to ministerial calls shall record that the specific arrangements (*BCO 20-1, and BCO 8-7 as applicable*) ~~and~~ of the call were found to be in order. The call document need not be attached to the minutes.

ITEM 3: Amend *RAO 16-3.e.5* by the addition of a *BCO* reference (underlined) in three places:

RAO 16-3.e.

- 5) Minutes of presbytery relating to examinations must list all specific requirements and trials for licensure and/or ordination which have been accomplished, including that each candidate being examined for ordination was required to “state the specific instances in which he may differ with the *Confession of Faith* and Catechisms in any of their statements and/or propositions” (*BCO 19-2; 21-4*). This does not mean that a separate vote on

참고용임

총회 운영 세칙(RAO) 제 50 차 총회가 채택한 수정안

1 번 항목: 총회운영세칙 4-21.ㄷ을 수정하여 한 문단을 추가합니다 (4-21.ㄷ.4)] - 밑줄 친 부분).

RAO 4-21. 총회 상임 위원회들과 기관들의 회의록을 보존하기 위한 지침들

ㄷ. 회의록의 내용들은 다음 사항들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모든 회의에서 개회 및 폐회 기도를 인도한 사람들의 이름들;
- 2) 임시 회의의 경우, 회의 목적을 진술하는 회의 소집 부분이 원래 소집서에 기록된 그대로 회의록에 기록되어야 한다;
- 3) 위원회나 이사회의 결의들의 기록은, 채택된 모든 동의안들과 처리된 안건을 포함하여, 위원회나 이사회가 역사적인 목적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추가 정보들과 함께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교회 치리회에서, 기각된 동의안들은 기각된 동의안을 기록으로 남기도록 찬동 투표를 받지 못하는 한 기록에 포함되지 않는데, 찬동 투표를 받는 경우 기각된 동의안은 반드시 남겨야 한다. 주가 되는 각 동의안은 구별된 문단으로 기록되는 것이 정상이다. 재청과 절차적 동의안은 그것들과 관계된 주 동의안과 같은 문단에 기록되어야 한다. 주 동의안들은, 만일 그것들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사안의 같은 항목에 관계된 것이면, 같은 문단에 기록되어야 한다.
- 4) 그 위원회나 이사회가 총회로부터 받은 지시들을 이행한 것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정보에 대한 기록 및 그 위원회나 이사회가 그 해에 채택한 실질적 정책과 실질적 정책을 변경한 내용들에 대한 기록이 포함되어야 한다.

2 번 항목: 총회운영세칙 16-3.ㄱ.6 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밑줄 친 부분이 추가된 것).

RAO 16-3.ㄱ. 노회록 보관을 위한 지침서

- 6) [목회] 사역의 청빙들에 관계된 노회록은 반드시 그 청빙의 구체적인 합의안들(헌법 20-1, 및 해당되는 경우에 헌법 8-7)이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되었음을 기록해야 한다. 그 청빙 서류를 노회록에 첨부할 필요는 없다.

3 번 항목: 총회운영세칙 16-3.ㄱ.5 세 곳에 헌법 조항을 참고로 추가합니다 (밑줄 친 부분)

RAO 16-3.ㄱ.

- 5) 고시들에 관계된 노회록은 반드시 강도사 인허와/또는 안수식을 위하여 그동안 시행되어 온 구체적인 필수 과목 사항들과 [실습] 시험들 모두를 목록 별로 기록해야 하는데, 안수를 위하여 시취를 받은 각 후보가 “신앙 고백서와 요리문답들 중에 어떤 진술 내용들과/또는 가정들과 [견해를] 달리하는 구체적인 경우들을 진술하도록”(헌법 19-2, 21-4) 요구하고

each item must be recorded. Presbytery minutes shall record ministers' and ministerial candidates' stated differences with our Standards in their own words. Each presbytery shall also record whether:

- a) the candidate stated that he had no differences; or
- b) the court judged the stated difference(s) to be merely semantic; or
- c) the court judged the stated difference(s) to be more than semantic, but “not out of accord with any fundamental of our system of doctrine” (*BCO* 19-2; 21-4); or
- d) the court judged the stated difference(s) to be “out of accord,” that is, “hostile to the system” or “strik[ing] at the vitals of religion” (*BCO* 19-2; 21-4).

ITEM 4: Amend RAO 16-3.e.8) as follows (strike-through for deletions, underlining for new wording):

RAO 16-3.e.

- 8) Minutes of presbytery dealing with judicial cases shall not be dealt with by Committee on Review of Presbytery Records (~~*BCO* 40-3~~) when notice of appeal or complaint has been given the lower court (*BCO* 40-3), ~~but still~~ Nevertheless, minutes of judicial cases must always be submitted for review as part of the record of presbytery.

ITEM 5: Amend RAO 16-10.a as follows (strike-through for deletions, underlining for new wording):

RAO 16-10

- a. Presbyteries shall be advised of exceptions of form; however, they shall take note in their minutes of exceptions of substance taken by the Assembly, together with their responses adopted by the presbytery to these exceptions. These responses should normally be adopted by Presbytery in the same calendar year as the exceptions were taken by the Assembly. Regardless, responses must be filed ~~no less than one month prior to General Assembly~~ in accordance with RAO 16-4.d.

있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 이것이 각 사안에 대하여 개별적 투표를 한 것을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노회록은 목사들과 목사 후보생들이 우리의 표준과 다르게 진술한 것을 그들 자신들의 말로 기록해야 한다. 각 노회 역시 [다음과 같이] 했는지 안했는지를 기록한다:

- ㄱ) 후보가 견해(들)를 달리하는 것이 없다고 진술했다; 또는
- ㄴ) 치리회가 진술된 견해(들)의 차이가 단순히 어의적인 것이라고 판결했다; 또는
- ㄷ) 치리회가 진술된 견해(들)의 차이가 어의적인 것 이상이지만, “우리 교리 체계의 근본적인 것들 중 어느 것과도 일치하지 않는 것은 없다”(헌법 19-2, 21-4)고 판결했다; 또는
- ㄹ) 치리회가 진술된 견해(들)는 “일치하지 않는다,” 즉, “체계에 적대적이다” 또는 신앙의 생명력에 치명적”(헌법 19-2, 21-4) 이라고 판결했다.

4 번 항목: 총회운영세칙 **16-3.ㄱ.8** 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취소선은 삭제, 밑줄 친 곳은 추가된 부분임)

RAO 16-3.ㄱ.8.

- 8) 법적 소송건들을 다루고 있는 노회록들은 상소나 고소 통보서가 하위 치리회에 제출되었을 때에는 (헌법 40-3) 노회록 검열 위원회가 다루지 않아야 한다 (헌법 ~~40-3~~). 그렇지만 법적 소송건들의 노회록들은 여전히 노회 기록의 일부로서 검열받기 위해 반드시 제출되어야 한다.

5 번 항목: 총회운영세칙 **16-10.ㄱ**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취소선은 삭제, 밑줄 친 곳은 추가된 부분임).

RAO 16-10 총회에 응답을 위한 지침

- ㄱ. 노회들은 양식의 예외들에 대해 조언을 받는다 받아야 한다; 그러나, 노회들은 총회가 채택한 본질적 예외들에 대하여, 노회가 채택한 이 예외들에 대한 그들의 응답들과 함께, 노회록에 기록해야 한다. 이 예외들은 일반적으로 총회가 예외들로 취한 같은 해에 노회가 채택해야 한다. 상관없이, 응답들은 총회 한 달 이전에 총회운영세칙 16-4.ㄹ에 따른 기한 내에 반드시 접수되어야 한다.